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6일, 황정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
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정아의원)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R&D)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세제 차원의 지원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일부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현행법 제45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았던 과학기술단체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32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계획을 감안하여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후 기초과학분야 이외에 경제·인문사회, 국방·해양과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감면대상 기관을 확대하면서, 감면액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율을 하향조정(100%→50%)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각 연구기관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 안정적인 연구 지원에, 국가 정책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

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초과학 연구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성, 타 연구 기관과의 형평성, 해당 연구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